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1차)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4. 8. 22.(목)]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92번길 41-9 (도당동 127번지)

공 고 요 약 안 내

이번 공고는 '23. 10. 공고 후 미임대된 주택에 대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모집하는 공고로, **입주자격 중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선정하는 공고입니다. (p.2 참조)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계층	자격사항	
①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 8. 23. ~ 2005. 8. 22.)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완화조건 9세 이하)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완화조건 9세 이하)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이번 공고에는 '고령자 계층'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2.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제한 : 없습니다.

- 세대원수와 상관없이 16, 26A 및 44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 총자산 합산액 및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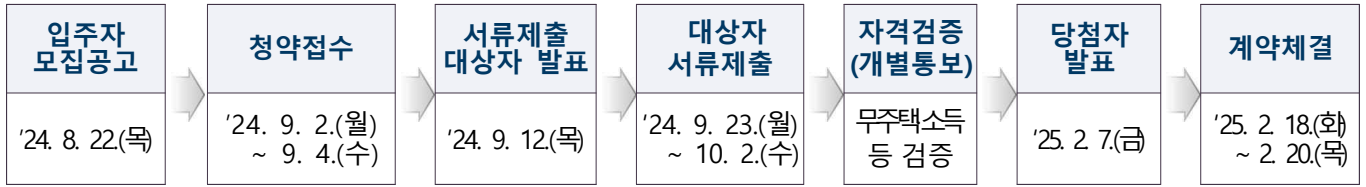
계층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총자산금액	1억원 이하	2억 7,3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자산요건 없음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	자동차 소유 불가	3,708만원 이하		자동차 요건 없음

4. 금회 모집호수

(단위 : 호)

구 분	총 모집호수	16	26A	44
합 계	93	29	54	10
당첨자	23	9	14	-
예비자	70	20	40	10

5. 공급일정



6. 입주자격완화 순위 적용 기준

입주자격완화 순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동일)]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급대상</th> <th>가구원수</th> <th>일반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td> <td>1인</td> <td>120% 이하</td> </tr> <tr> <td>2인</td> <td>110% 이하</td> </tr> <tr> <td>3인 이상</td> <td>100% 이하</td> </tr> <tr> <td rowspan="2">맞벌이 (예비)신혼부부</td> <td>2인</td> <td>130% 이하</td> </tr> <tr> <td>3인 이상</td> <td>120% 이하</td> </tr> </tbody> </table>			공급대상	가구원수	일반조건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예비)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공급대상	가구원수	일반조건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예비)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급대상</th> <th>일반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청년</td> <td>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td> <td>5년 이내</td> </tr> <tr> <td rowspan="2">(예비)신혼부부</td> <td>혼인기간</td> <td>7년 이내</td> </tr> <tr> <td>자녀의 연령</td> <td>6세 이하</td> </tr> <tr> <td>한부모가족</td> <td>자녀의 연령</td> <td>6세 이하</td> </tr> </tbody> </table>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급대상</th> <th>가구원수</th> <th>완화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td> <td>1인</td> <td>140% 이하</td> </tr> <tr> <td>2인</td> <td>130% 이하</td> </tr> <tr> <td>3인 이상</td> <td>120% 이하</td> </tr> <tr> <td rowspan="2">맞벌이 (예비)신혼부부</td> <td>2인</td> <td>140% 이하</td> </tr> <tr> <td>3인 이상</td> <td>130% 이하</td> </tr> </tbody> </table>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조건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예비)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조건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예비)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급대상</th> <th>완화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청년</td> <td>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td> <td>7년 이내</td> </tr> <tr> <td rowspan="2">(예비)신혼부부</td> <td>혼인기간</td> <td>10년 이내</td> </tr> <tr> <td>자녀의 연령</td> <td>9세 이하</td> </tr> <tr> <td>한부모가족</td> <td>자녀의 연령</td> <td>9세 이하</td> </tr> </tbody> </table>			공급대상	완화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공급대상	완화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급대상</th> <th>완화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50% 이하</td> </tr> </tbody> </table>			공급대상	완화조건	전체	150% 이하											
	공급대상	완화조건																
전체	150% 이하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2·3순위로 입주하신 분이 향후 갱신계약할 때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로 입주하신 분은 **1회에 한해서 갱신 계약이 허용**됩니다. 다만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추가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7. 기타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자녀 없을 시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시 **10년**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임대대상

■ 공급형별 모집현황

공급형별	공급계층	건설호수	금회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최고층수	발코니 확장 여부	방개수
			계	당첨자	예비자	주거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전용	공용	기타공용				
총계		136	93	23	70							
16	대학생	78	19	9	10	16.6700	9.1176	3.9207	29.7083	8층	비확장	거실 1 침실 1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26A	대학생	31	20	-	20	26.2200	14.3410	6.1668	46.7278	8층	"	거실 1 침실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6B [미모집]	고령자 (주거약자용)	11	이번 공고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4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6	10	-	10	44.4100	24.2900	10.4451	79.1451	8층	"	거실 1 침실 2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이며,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청약 및 입주 관련】

-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23. 10.) 후 '24. 8월 현재 미계약되어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당첨자와 향후 미임대주택 발생 시 계약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이번 공고에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입주는 2025년 3 ~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3. 10.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하신 분들은 2024년 12월에 최초 입주 예정입니다.)
- **이번 공고에는 '고령자 계층'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4. 8. 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및 자산·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주택형별 한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 또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 주택형 또는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하실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되어 청약건 모두 탈락됩니다.
- 공고에 첨부된 팸플릿 등을 통하여 형별 평면도, 발코니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세대의 계약해제(또는 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당첨자 발표일 전에 미임대주택의 수가 변동될 경우에는, 이번에 모집하는 **당첨자 및 예비자의 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예시)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및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두 단지에 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이 더 빠른 단지, 청약접수일까지 같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상실됩니다.
- 장기임대주택(연구 · 국민 · 행복 및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에는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삭제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추첨 관련】

- 같은 공급형 중 미달된 계층의 물량은 타 공급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6형 : 대학생 · 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 대학생 · 청년 계층, 신혼부부 · 한부모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 이번에 일부 계층은 예비입주자만 모집합니다.

【계층 변경 관련】

- 이 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공급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계층을 바꿔 그 계층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계층으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산됩니다.
- 이 주택에 거주 중인 대학생 · 청년 계층 등이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적 관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등은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준공 및 지적정리 후 해당 면적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 이 주택은 지상 주차장만 있습니다.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설치된 항목(주택형 무관)】

전용면적	16㎡	26㎡	44㎡
빌트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쿡탑(2구형) - 냉장고장 - 냉장고 - 책상 및 책장 - 신발장 - 주방가구 - 발코니 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장 - 주방가구 - 발코니 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장 - 주방가구 - 발코니 선반
바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립카펫 		

- 에어컨은 빌트인 항목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2. 임대조건

■ 임대조건

(단위 : 원)

공급형	공급 계층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D]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상한 및 하한금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E=A+D]	월임대료
		계 [A]	계약금(5%) [B=A×5%]	잔금(95%) [C=A×95%]					
16	- 대학생 - 소득없는 청년	26,520,000	1,326,000	25,194,000	119,340	+	10,000,000	36,520,000	61,000
						-	22,000,000	4,520,000	183,500
	소득있는 청년	28,080,000	1,404,000	26,676,000	126,360	+	11,000,000	39,080,000	62,190
						-	23,000,000	5,080,000	193,440
	주거급여 수급자	23,400,000	1,170,000	22,230,000	105,300	+	7,000,000	30,400,000	64,460
						-	19,000,000	4,400,000	160,710
26A	- 대학생 - 소득없는 청년	40,460,000	2,023,000	38,437,000	182,070	+	18,000,000	58,460,000	77,070
						-	33,000,000	7,460,000	278,320
	소득있는 청년	42,840,000	2,142,000	40,698,000	192,780	+	19,000,000	61,840,000	81,940
						-	35,000,000	7,840,000	294,860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47,600,000	2,380,000	45,220,000	214,200	+	22,000,000	69,600,000	85,860
						-	39,000,000	8,600,000	327,950
4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78,400,000	3,920,000	74,480,000	352,800	+	36,000,000	114,400,000	142,800
						-	65,000,000	13,400,000	542,380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4. 8. 22.(목))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미임대주택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없는 '청년 계층' 청약자의 임대조건은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청약자의 임대조건과 같습니다. 이 임대조건은 향후 갱신계약 전까지는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전환보증금 제도】

- 전환보증금[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 또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 위 표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조건으로, 향후 이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후 입주시작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납입하시고, 잔금 납입 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은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16형 대학생의 경우 : 기본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26,520,000원, 기본 월임대료 119,340원에서
- (증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10,000,000원을 추가납부하여 임대보증금을 36,520,000원까지 높이면 월임대료는 61,000원으로 내려갑니다.
- (감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22,000,000원만큼 감액하여 임대보증금을 4,520,000원까지 낮추면 월임대료는 183,500원으로 올라갑니다.

3. 공급일정 및 청약방법

공급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청약 (인터넷,모바일 또는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모바일 청약 포함) '24. 9. 2.(월) 10:00 ~ 9. 4.(수) 18:00 ■ 방문 청약 '24. 9. 2.(월) 10: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가능 (기간 내 청약사항 변경 가능) • 방문 청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오리역 1번 출구)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4. 9. 12.(목)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에서 확인
심사서류 제출 (등기우편으로 제출)	'24. 9. 23.(월) ~ 10. 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제출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 임대공급운영1팀 '부천도당 행복주택 담당자 앞' * '24. 10. 2.(수) 소인분까지 유효 - 봉투에 [접수번호 / 단지명 / 신청형 /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25. 2. 7.(금) 17: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에서 확인 • ARS : 1661-7700
계약체결 (인터넷,모바일 또는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약(모바일 계약 포함) '25. 2. 18.(화) 10:00 ~ 2. 20.(목) 17:00 ■ 방문계약 '25. 2. 18.(화) 10: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방문계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오리역 1번 출구)

- 청약신청은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이름 : LH 청약플러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내에는 청약 신청내용의 변경 · 수정 및 삭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청약하신 분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 전체의 소득 · 자산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을 위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정보회신 시점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LH 청약플러스 내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청약방법

현장에 방문하여 청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님께서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LH 경기남부지역본부)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PC 또는 모바일)

■ PC

■ 청약방법

① 인증서 준비 → ② LH청약플러스 접속(<https://apply.lh.or.kr>) → ③ 인증서 로그인 → ④ 청약신청

① 인증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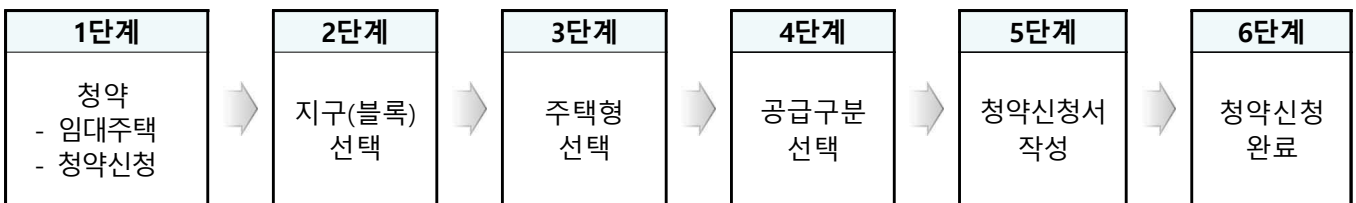
-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시는 고객께서는 청약신청 전까지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고 LH 청약플러스에 해당 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LH 청약플러스 접속(<https://apply.lh.or.kr>)

- 경로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청약신청



■ 기타사항

- 고객님의 청약신청하실 때 사용할 PC에서 실제 인터넷 청약신청하기 1 ~ 2일 전에 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고객님의 청약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완료 후 고객님의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은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청약신청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또는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청약방법

①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③ 인증서 로그인 → ④ 청약신청

①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에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청약신청(모든 화면이 PC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 기타사항

- 모바일 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로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등으로 모바일 청약이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으로 이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와 모바일 간 청약신청의 수정 ·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PC로 청약신청한 건에 대해 모바일로 수정 · 취소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청약신청한 건에 대해 PC로 수정 ·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사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LH 청약플러스' 어플로 당첨자 확인 및 계약내역 조회, 잔금 납부내역 조회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 청약

- PC 또는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경우, 아래 장소에서 고객님의 청약을 도와드립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미지참 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세부안내

일 자	'24. 9. 2.(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장 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교통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주차 가능합니다.) • 지하철 :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도보 2분거리) • 버 스 : 오리역 정류장에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약 도	
필요서류	<p>□ 아래 서류와 p.19 ~ p.22의 '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본인'이란 청약자를 의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도장(서명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배우자일 경우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이 배우자 외의 사람인 경우(예비 배우자 포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감증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② (자필서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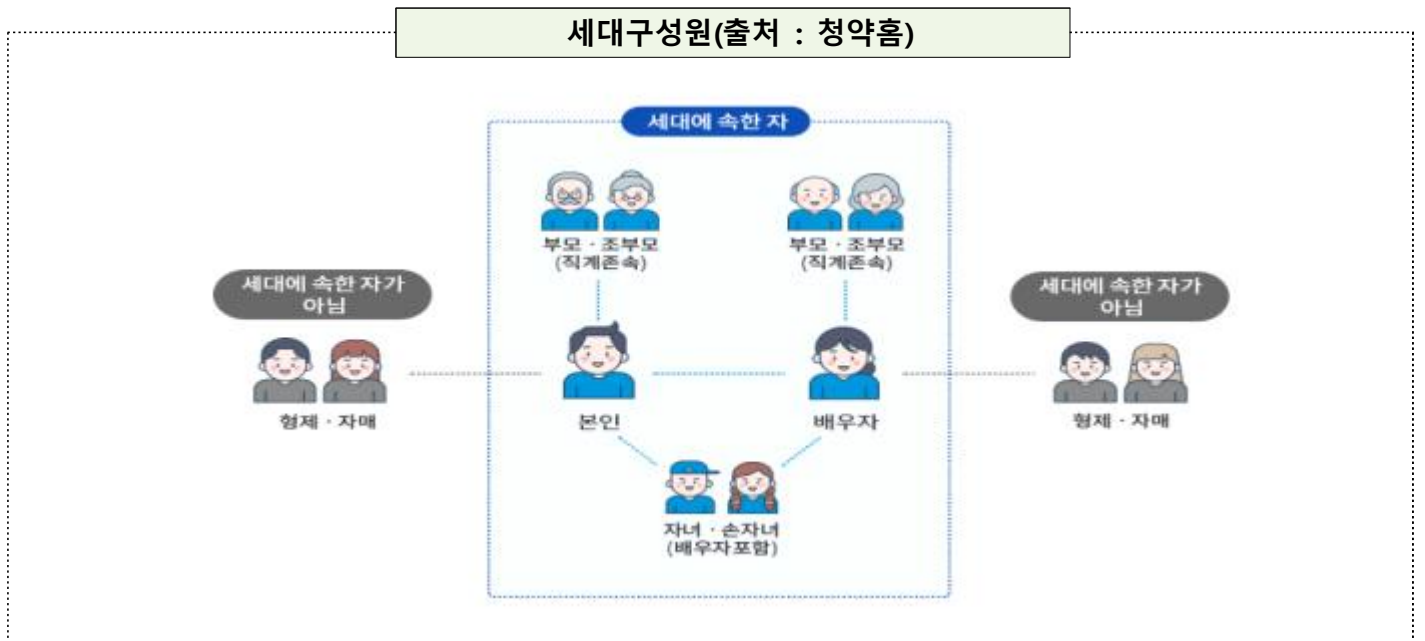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4-1. 공통자격

【세대구성원 관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계층에 따라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달라지니, 각 계층의 신청자격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용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신청자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소유 관련】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를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35 「11.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사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향후 갱신계약이 거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및 자동차 등 자격 검증 관련】

-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등을 말하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소득유무를 판단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 해당 자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약신청자에게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부채(금융부채 제외)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4. 8. 22.(목))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향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상한금액이 달라지므로 청약 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증명 관련】 - ‘대학생 및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4. 8. 22.(목))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4. 8. 22.(목)) 현재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 ①-㉠ 및 ② ~ ④ / 취업준비생 : ①-㉡ 및 ② ~ ④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합니다.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상한선 (세전금액)					
	1순위(일반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완화조건)	
1인	4,179,557원 이하	120%	4,876,150원 이하	140%	5,224,446원 이하	150%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8,123,568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10,797,974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372,701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3,162,607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4,344,92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 소득한도액은 6인가구 소득금액 기준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수 1인당 추가금액		
1순위(일반)	2순위(완화)	3순위(완화)
+788,211원	+945,853원	+1,182,317원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1억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관련】

- 가구원수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월평균 소득기준 적용 목적)

구 분	내 용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제외)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때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합니다.

【학교 관련】

- 위에서 말하는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단,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합니다.
- 위에서 말하는 '고등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 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다음학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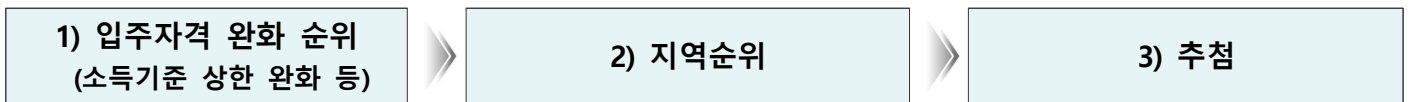
- '다음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음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신청 및 입주자격입니다. 이에 당첨 후 입주 시에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시에도 동일합니다.)

1) 입주자격 완화 순위

순 위	기 준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기본 입주자격)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120% ~ 140%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150%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2) 지역순위

순 위	기 준
1순위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천시 -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2순위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의 지역)
3순위	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는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4-3. 청년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4. 8. 22.(목)) 현재 무주택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청년 : ①-㉠ 및 ② ~ ⑤
 2) 사회초년생 : ①-㉠ 및 ② ~ ⑤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 8. 23. ~ 2005. 8. 22.)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1) 청약자가 세대주인 청년일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2)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청년일 경우 청약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완화조건] 14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구분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상한선 (세전금액)					
		1순위(일반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완화조건)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4,876,150원 이하	140%	5,224,446원 이하	150%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8,123,568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10,797,974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372,701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3,162,607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4,344,923원 이하	
세대원 (본인)	1인	4,179,557원 이하	120%	4,876,150원 이하	140%	5,224,44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 소득한도액은 6인가구 소득금액 기준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수 1인당 추가금액		
1순위(일반)	2순위(완화)	3순위(완화)
+788,211원	+945,853원	+1,182,317원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입주 전까지 청약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관련】

- 가구원수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월평균 소득기준 적용 목적)

구 분	기 준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또는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사회초년생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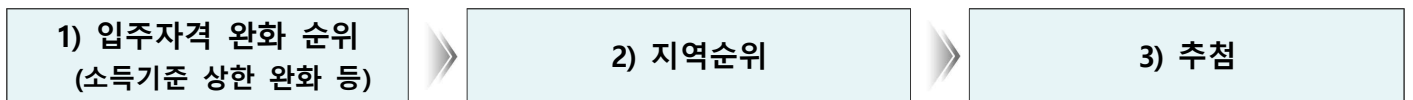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퇴직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는 '예술인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예술활동 기간이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여야 함)

【소득 관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은 동일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시에도 동일합니다.)

1) 입주자격 완화 순위

순 위	기 준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기본 입주자격)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120% ~ 140% 이하) 및 기간의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150% 이하) 및 기간의 완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지역순위

순 위	기 준
1순위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천시 -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2순위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의 지역)
3순위	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4-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4. 8. 22.(목))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및 ② ~ ④
- 2) 예비신혼부부 : 향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①-㉠ 및 ② ~ ④
- 3)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및 ② ~ ④

①-㉠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 2)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② 1) 일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2) 맞벌이 신혼부부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상한선 (세전금액)					
		1순위(일반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완화조건)	
일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8,123,568원 이하	15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10,797,974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372,701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3,162,607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4,344,923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040,426 원 이하	130%	7,581,997 원 이하	140%	8,123,568 원 이하	150%
	3인	8,638,379 원 이하	120%	9,358,244 원 이하	130%	10,797,974 원 이하	
	4인	9,898,160 원 이하	120%	10,723,007 원 이하	130%	12,372,701 원 이하	
	5인	10,530,085 원 이하	120%	11,407,592 원 이하	130%	13,162,607 원 이하	
	6인	11,475,938 원 이하	120%	12,432,267 원 이하	130%	14,344,923 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 소득한도액은 6인가구 소득금액 기준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가구원수 1인당 추가금액		
	1순위(일반)	2순위(완화)	3순위(완화)
일반	+788,211원	+945,853원	+1,182,317원
맞벌이 부부	+945,853원	+1,024,674원	+1,182,317원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구원수 관련】

- 가구원수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월평균 소득기준 적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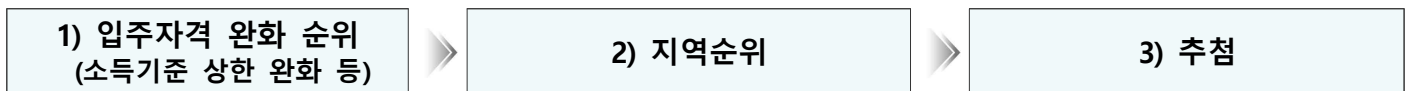
구 분	기 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⑥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자격 관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시에도 동일)



1) 입주자격 완화 순위

순 위	기 준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기본 입주자격)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120% ~ 140% 이하) 및 기간의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150% 이하) 및 기간의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지역순위

순 위	기 준
1순위	신청자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천시 -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2순위	신청자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의 지역)
3순위	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4-5.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4. 8. 22.(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②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는 주택소유 여부만 검증하고, 소득 및 자산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구원수 관련】

- 가구원수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기 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⑥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시에도 동일)

【유의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입주 및 향후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4. 8. 22.(목))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기간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123456-78888888(O), 123456-7***** (X)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돌려드리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관련】

구 분	내 용
대상자 발표	'24. 9. 12.(목) 17:00 이후 - 대상자 조회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제출기간	'24. 9. 23.(월) ~ '24. 10. 2.(수)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24. 10. 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부천도당 행복주택 담당자 (우 : 13637) - 봉투 겉면에 ' 접수번호 / 단지명 / 신청형 / 이름 ' 기재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범위	아래 1) + 2)에 해당하는 서류

1) 기본 제출서류

연번	필수 여부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또는 양식
1	필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필서명 * ' 대학생 계층 '은 부 · 모를 포함하여 작성	양식1
2	필수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양식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로 자필서명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에 '정보제공 사실 미통보'에 서명 (미통보에 서명하지 않을 시 청약자가 비용부담)	양식2
3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LH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후라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양식3

연번	필수여부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또는 양식
4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확인 후, 청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자가 대표로 서명) - 확인서 및 약약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양식4
5	필수	입주자격 완화 약약서		양식5
6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자 및 그 예비배우자 2인의 현재 등본 모두 제출 -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7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본인 기준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혼이어도 배우자 유무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청약자와 예비 배우자 2인 모두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당사자 2인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8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4. 8. 22.(목))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청약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9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	
10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세대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4. 8. 22.(목))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 	
11	해당자만 제출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 전인 자녀를 세대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12	해당자만 제출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된 자녀를 세대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13	해당자만 제출	기타 증빙 서류	· 위 사항들 외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

2) 신청자격 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공급 대상	세부 대상	연번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처 또는 양식
대학생 계층	대학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양식6)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양식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예정 증명서 - 졸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학교
	취업 준비생	1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공급 대상	세부 대상	연번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처 또는 양식		
청년계층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1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등		
		2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필요	국민건강 보험공단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					
	사회 초년생	1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등		
		2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필요	국민건강 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1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	지방고용 노동청		
		2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등		
	3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필요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술인]					
	1	·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등			
	3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필요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1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능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해당 직장		
		2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 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 세무서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이 넘어 일부 기간 제외를 요청할 경우]				
		1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해당 학교		
	2	· (복무 중인 경우) 복무확인서 / (복무 완료인 경우) 병적증명서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출력 필요] - 병역 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사람 중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병무청 민원24			

공급 대상	세부 대상	연번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처 또는 양식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1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통장사본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1	· 혼인관계증명서(청약자 본인 기준) - 반드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1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청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자가 대표로 서명)	양식7
		2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 향후 입주 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	양식8
		3	· 신분증 사본 - 대표 청약자의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4	· 혼인관계증명서(청약자 본인 기준) - 이 주택 입주 전까지 청약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확인 목적 - 반드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 시) 입주 시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한 사람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1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 세무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1	· 입주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통장사본
주거급여 수급자	수급자	1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5. 2. 7.(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선호하지 않는 동·호를 배정받으셔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미신청·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① 청약 → ② 청약 결과 확인 → ③ 당첨 / 낙찰 결과 조회
ARS 확인방법	① 1661-7700 → ② 1번 당첨자 조회 → ③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④ 당첨 여부 확인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및 통합공공임대)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 순번이 결정되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임대 주택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계약 안내 [계약기간 : '25. 2. 18.(화) 10:00 ~ 2. 20.(목) 17:00]

-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당첨자 지위는 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일정 및 방문계약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첨자(계약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알려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관련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 접수 시 “SMS 수신동의” 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방문계약 [계약일 : '25. 2. 18.(화) 10: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구 분	내 용
1) 기본서류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 단,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계약자 도장(단, 본인 방문 시에는 서명 가능)
2) 추가서류 (대리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 기본서류 일체 - 대리인(배우자)의 신분증 -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 배우자 외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 기본서류 일체 - 아래 ①, ② 중 하나 선택하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감증명 방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② 자필서명 방식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3) 추가서류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및 신분증

7.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콜센터 상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2. 30.에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청약 신청자격별 해당세대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청약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70%;">안 내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동의서 수집 사유</td> <td>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td> </tr> <tr> <td>동의서 서명 대상</td> <td>세대구성원 전원 서명</td> </tr> <tr> <td rowspan="2">서명</td> <td>정보 제공 동의</td> <td>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td> </tr> <tr> <td>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td> <td>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td> </tr> <tr> <td>동의서 유효기간 등</td> <td>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에 동의 시 신청자분께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계약 및 최대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층 별 최대 거주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공급계층</th> <th style="width: 60%;">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공급계층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공급계층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 선정 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불법양도 ·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재청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계약 및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된 후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 공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내 용														
갱신계약 자격 및 갱신 임대조건	<p>【갱신계약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방법과 일정은 추후 갱신계약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퇴거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 자격은 공급대상자 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신청자격 중 아래 요건은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96 530 683 584">공급계층</th> <th data-bbox="683 530 1501 584">갱신 시 확인하지 않는 요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6 584 683 674">대학생 계층</td> <td data-bbox="683 584 1501 674">-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td> </tr> <tr> <td data-bbox="296 674 683 763">청년 계층</td> <td data-bbox="683 674 1501 763">-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td> </tr> <tr> <td data-bbox="296 763 683 853">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td> <td data-bbox="683 763 1501 853">- 혼인 중일 것, 주택청약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td> </tr> </tbody> </table>	공급계층	갱신 시 확인하지 않는 요건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청년 계층	-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혼인 중일 것, 주택청약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공급계층	갱신 시 확인하지 않는 요건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청년 계층	-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혼인 중일 것, 주택청약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유지해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자격	<p>【갱신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09 1256 699 1352"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 data-bbox="699 1256 1485 1310">할증비율</th> </tr> <tr> <th data-bbox="699 1310 1090 1352">최초 갱신계약 시</th> <th data-bbox="1090 1310 1485 1352">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1352 699 1397">10% 이하</td> <td data-bbox="699 1352 1090 1397">110%</td> <td data-bbox="1090 1352 1485 1397">120%</td> </tr> <tr> <td data-bbox="309 1397 699 1442">10% 초과 30% 이하</td> <td data-bbox="699 1397 1090 1442">120%</td> <td data-bbox="1090 1397 1485 1442">130%</td> </tr> <tr> <td data-bbox="309 1442 699 1487">30% 초과</td> <td data-bbox="699 1442 1090 1487">130%</td> <td data-bbox="1090 1442 1485 1487">140%</td> </tr> </tbody> </table> <p>【순위별 갱신계약 적용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사람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자는 무주택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구 분	내 용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등록 및 주차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일정 가액(24년의 경우 3,708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차량등록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은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이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이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세대분리했을 경우는 중복입주로 간주하여 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 날 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취소) 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가 제출한 심사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신청자의 가입여부만 확인합니다. 이 주택에 신청하시거나 입주자로 선정되신 후에도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해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해당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시 납부한 계약금에서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그 외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해지됩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대표 청약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 각각 제출) - 혼인신고 후 처리 기간이 수일이상(1 ~ 2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주 전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신청중인 접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 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일보다 앞서 실입주하실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관계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e-billing)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8. 지구 · 단지 및 세대 내부 여건 등

구 분	내 용
지구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행복주택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 · 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지역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 도로 신설·확장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서 북동측 거리(부천도당 단지입구 기준) 1.6km이내에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 남측 거리 1.7km이내에 지하철 7호선 / 서해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당동 공업지역(1.1km), 오정산단(1.9km), 서운산단(3.7km), 부천대학교(3.5km), 가톨릭대학교(3.6km), 부천시청(3km)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입구 기준 300m이내에 부천시립북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입구 기준 500m이내에는 춘의산 및 부천백만송이장미원, 도당초등학교 및 도당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입구 기준 600m이내에 부천북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부천도당 단지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 · 상담장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단지여건</p>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외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팸플릿 등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 녹지, 하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도로, 상업시설 및 자족시설 등 인접용지로 인하여 소음, 분진, 빛공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지원시설, 지역편의시설, 경비실, 공용세탁실, 무인택배함, 펌프/발전기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설치되며, 이에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동 저층부 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시공계획(세부 식재 및 시설물 위치 등) 및 추진 일정 등은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부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및 임대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 토목, 조경, 마감, 부대시설 등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PIT에 전기실, 저수조, 오수정화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조)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발전기 D.A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 및 결로수 등 배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 ·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 하여야 하므로 특정 입주자 또는 단체가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 · 일조 · 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01동 1, 2층이 근린생활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101동 9 · 10 · 11 · 12 · 13 · 14 · 15호 라인)로 시공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101동 5 · 6 · 7 · 8호 라인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외부(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 소음 ·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 및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상 66대이며, 자전거보관소 15대, 무인택배보관함은 동 지상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의 경우, 101동 중앙에 3대의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입니다. • 승강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 101동에 설치된 승강기와 승강기 제어반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01동 지붕층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의 디자인 및 배치를 각 세대의 단순 미관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상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차충전소, 생활자원보관소, 단지보행자 출입구, 아파트 공동현관, 승강기, 1층 복도외부, 옥상출입구에 설치됩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루프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는 2개층이 있으며 필로티 상부세대는 외기에 면함에 따른 결로나 난방효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하 오수정화조가 설치되며, 아파트 PIT에 통기관이 설치되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마련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주변 다수의 가공 전주 및 가공 통신주가 설치(이설 및 철거 없이 존치 예정)되어 있고, 단지 한전 전기공급을 위한 단지 내 신설 전주가 설치 예정되어 있으므로 세대 미관, 조망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세대 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단지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로서 공공분양 공고 시와 달리 각 세대별 공간옵션 및 마감재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옵션 선택은 불가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슬라브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각 동 1층 세대의 발코니 난간은 발코니 창호를 통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층 승강기 홀 및 44㎡형·26㎡형 방향 계단실 내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승강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16㎡ 형은 방향 계단실 환기창 없음)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표시·아파트 문양·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환기탑(D·A)이 배치되어 소음 및 열풍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세탁실)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시 점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세탁실)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MDF, 방재실, 숙직실, 경비실, 기계전기실, 펌프실, 무인택배보관함, 공용세탁실, 휴게실, 지역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은 입주인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관, 발코니, 승강기 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내경 치수 등은 골조 및 마감공사의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방가구, 합성수지 창호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급수·급탕 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되며,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 1대가 완속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비디오폰이 설치되며, 가스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합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 라인에 따라 팸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플릿 등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당첨 후 계약기간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준공 전 6개월까지 신청세대와 그 이후 신청세대의 시공업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리모델링 등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급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옥상조경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책자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및 창호 개폐가능 여부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내 신설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으며,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학교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구역 및 학생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23 1776 1493 1917"> <thead> <tr> <th>학교</th> <th>담당기관</th> <th>문의처</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교</td> <td rowspan="2">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td> <td rowspan="2">032)620-0112</td> </tr> <tr> <td>중학교</td> </tr> <tr> <td>고등학교</td> <td>경기도 교육청(경기에듀콜센터)</td> <td>031)139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청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배치 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학생 수용여건, 학생 수용 계획 등에 따라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담당기관	문의처	초등학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032)620-0112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학교	담당기관	문의처									
초등학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032)620-0112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9.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로 해당 등급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	-

10.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신청관련 안내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역과 세부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향후 계약체결 시 안내드리는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5. 2. 18.(화) ~ 2. 20.(목)
- 신청방법 : 계약 체결기간 내 LH 공사 방문 또는 등기 발송
[주소 - (1363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 임대공급운영1팀]
- 필요서류 : 설치 신청서(별도양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 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서

■ 설치가능한 편의시설 항목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 → 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각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1개) 설치	
	수건걸이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청각장애인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천장에 설치(주거약자용 세대 전체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대상 중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이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11.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소유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주택가액은 자산(부동산)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소유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 12. 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내용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내역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구분	항목	내용	자료 출처		
	사업소득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 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내용	자료 출처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임대보증금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 정보	

13. 소득·자산금액 산정 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총자산은 아래 식과 같이 산정합니다.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기타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구 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p>[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구 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금액	<p>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p>1. 지체장애인</p> <p>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p> <p>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p> <p>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p> <p>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5.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회사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동아건설(주) • ㈜대지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 (주)바탕건축사사무소 • (주)엠알솔루텍 • (주)드림엔지니어링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공고문의	LH	콜센터	국번없이 1600-1004, 1670-0003 [평일 09 : 00 ~ 18 : 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전용 상담전화 (한시적 운영)	'24. 9. 4.(수) 까지만 운영되는 전용 상담전화입니다.(이후 연결불가) 031)250-8483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청약	PC / 모바일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방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역 1번출구)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의 '소통·신고' 내 부패·부조리 신고의 「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2.(목)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